

# 전기제품 PL상담센터 발표

지난 2월중 이루어진 PL상담건수는 모두 25건이었으며, PL상담록과 제품별 회의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을 발췌하여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물론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2006. 2. 1~2. 28)

일자	상담품목	상담방법	상담 내용	조치 사항
2.3	꽃음플러그	내방	제품을 납품한 후에 부도가 났을 때도 제품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PL법에 의해서 보상해야 하나?	피해보상을 하여야함.(사건 경위에 따라 제조업체 등이 책임있음)
2.7	전자식안정기	내방	제품 및 코드에 붙이는 PL관련 주의 · 경고 사항의 글씨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나?	국내 규정은 없음
2.14	배선기구	전화	소비자가 임의로 제품을 개조하여 사용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체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개조의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2.16	엠프	전화	스토브를 켜 놓고 쇠자가 방을 비운 사이 옷가지에 불이 붙어 손해배상 청구	과실상계 적용
2.20	스위치,콘센트	내방	“습한 곳에서 사용하지 말 것” 이란 문구를 경고문구에 포함하려 하는데 실제로 소비자가 “습한 곳”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 설명서에 자세한 명기가 필요함
2.21	인두	내방	완제품 제조업체와 부품업체의 책임 한계	보험/피해보상(책임한계)
2.24	전기뜸질기	전화	외국에서 사온 전기제품은 사고 발생 시 PL법에 해당되는지?	국내 PL법에는 해당안됨
2.27	전기매트	전화	납품받는 업체에서 PL보험가입 및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품업체에서 책임지라는 계약서 강요	부품업체와도 기본계약을 철저히 하여 문서로 서로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아야함.